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Plan for Fire Fighting Organizations

Jin Chae<sup>+</sup>, Jeong Soo Lim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269 Taejosan-gil, Dong Nam-gu, Cheona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in Korea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 for fire safety through a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actual state analysis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First, since fire-fighting organizations should promote a fire safety policy and perform disaster response functions, we propose to reorganize the National Fire Agency into 2 Bureaus, 2 Offices, and 5 Departments. Second, the Local Fire Agencie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reorganized into 1 Bureau, 1 Office, 5 Sections, and 1 Unit. Third, the fire stations should be reorganized into 5 sec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the fire safety policies for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Key words:** fire-fighting, fire-fighting organization, reorganization

### 1. 서론

정부조직은 국가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행정수요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Lee, 2013: 188-189). 정부는 2017년 7월 26일 재난 대응 전문기관인 소방청을 독립시켰다. 이는 재난대응에 실패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재난 학습효과라고 볼 수 있다. 소방청을 만들어 일상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역할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편은 조직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직개편 과정은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쟁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소방조직 개편 결정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대안을 채택시키도록 설득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과 이해를 함께 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연합을 형성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여론을 조성하여 의사결정자들이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의사결정 집단에 포함되도록 시도하는 등 의사결정과정 안팎에서 다양

<sup>+</sup> Corresponding author: Jin Chae, Tel. +82-41-550-0983, Fax. +82-41-550-0999, e-mail. these21@korea.kr

하게 활동했다.

소방조직은 1975년 내무부 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을 신설하였으며, 2004년 소방방재청을 개칭하였다. 또한, 2014년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2017년 7월 26일 소방청이 독립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소방관련 조직개편은 주로 정권교체기와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에 이루어졌다.

화재예방과 육상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업무 중심인 소방이 일반직과 합쳐질 경우 옥상옥 구조의 보고체계와 업무 복잡화를 불러와 재난대응의 긴급성과 일상 불란한 지휘체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소방청을 독립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소방청 조직은 1실 2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정책 수요에 응답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조직 규모이다. 소방조직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향후 소방조직 개편에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과 소방조직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소방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환경변화와 소방안전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소방조직 개편에 앞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논의

### 1. 소방조직의 의의

소방조직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 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조직은 화재를 예방·진압하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한 개인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이, 집단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로부터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

전 확보의 수단으로서 소방조직은 존재 의의를 부여받으며 소방공무원은 그 구성원이 된다.

소방업무는 대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및 재난대응 업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소방조직의 기능은 국민의 안전을 주요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안락하고 안전한 삶은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소방조직의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동에 따라 그 수요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방조직의 영역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Yang, *et. al.*, 5: 126).

소방조직은 소방재원의 지출이 필요한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소방조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소방조직의 성격은 단순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는 것으로 보는 좁은 의미의 관점과 인명 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관점이 있다.

소방행정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지역 주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방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의 수가 증가해도 기존 주민이 향유하던 소방 서비스의 수준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소방행정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키기는 어렵다. 그리고 소방 서비스는 비경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방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거의 모든 주민이 향상된 수준의 소방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방조직은 각종 재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관리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조직의 특징은 일반적

으로 결과성, 긴급성, 위험성, 대기성, 가외성, 그리고 전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Jo, 2016: 4).

## 2. 조직개편의 의의

조직개편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개혁에서 비롯되었다. Caiden(1991)은 조직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직개편의 주체와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국가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하기에 어렵다(Kim, 2017: 29).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찾기 어려우며, 정부조직구조 설계 시 Gulick(1937) 등은 전통조직학자들이 제시한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Peters, 1992; Jo, 2007; Park, 2011). 정부조직개편의 목적도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Jeong, 2006; Moon, 2009; Park, 2011; Park, Oh, and Nam, 2011; Yoon, Yang, Jeon, 2011; Lee, Moon, 2011). 행정적 목적은 정부의 기능을 재구성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추진된 조직개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치적 목적은 정부 국정 철학의 상징성 확보,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통제력 강화하기 위함이며 정권 교체 시기에 추진된 조직개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조직은 정책 결정이 추진되는 무대이자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도인 동시에 정책 집행 수단의 관점에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조직개편은 Lowi(1972)의 정책유형론에 의하면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으로 구분된다. 구성정책은 행위 환경에 권력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과 권위에 대한 규칙으로 정부의 관할권 조정, 새로운 조직의 설립과 조정, 공무원의

인사·보수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Lowi(1972)는 구성정책 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자 간 게임 상황으로 전개되며 정당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 행위자들의 산물이며, 정치적 대립과 갈등 하에서 타협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Knott & Miller, 1987). 정부조직개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정치제도이다(Steinmo, 1993; Steinmo & Tolbert, 1998; Haggard & McCubbins, 2001).

## 3. 조직개편의 목표

조직개편의 목표는 조직의 변화 내용으로서의 목표 상태를 가진다. 개혁의 인지단계에서 현실수준과 기대수준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혁의 필요에 합의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목표설정에는 환경적 요구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대가 목표에 반영된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이념적 논의를 통하여 개혁의 전제를 설정하고 정치행정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념적 논의는 조직개편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목표 이전에 설정되어야 할 전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게 되면 조직개편의 추진과정이 목표 상태를 벗어날 때 그 신뢰를 발하지 못한다.

목표는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를 잇는 목표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개혁을 준비하게 된다. 목표의 설정단계에서 문제의 인식 차이로 발생하는 개혁 참여자들 간의 긴장관계는 타협과 양보라는 합리성 제약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합의된 합리적 개편안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에 집약되어 있다(Kim, 2005: 9).

## 4. 조직개편의 필요성

### 1) 행정의 환경변화

상호의존성을 내포하는 개방체제로서의 행정환경체는 외부환경과 조직 내부로부터 자원과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조직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

환된 산출물을 다시 환경으로 배출하여 환류 효과를 발생시킨다.

행정환경은 행정조직을 둘러싸고 행정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이며, 이때 행정수요는 행정환경으로부터 발생하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의 활동결과는 다시 환경으로 투입된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분권화의 확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고효율 저비용의 행정체계, 주민의 참여의식 증대와 행정조직의 책임성 증대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지방자치행정체제 발전모형 및 정책효과 분석」).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변화의 진폭과 주기가 넓고 변화되는 인간행위의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2) 행정수요의 변화

행정수요란 행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즉, 행정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회일반의 기대 및 요구를 말한다. 행정이란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공급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는 구체화된 사회적 수요와 구체화될 사회적 수요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행정수요는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의 기대와 요구가 그대로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기대 및 요구가 대립·투쟁·타협을 통하여 그 개인 또는 집단의 기대와 요구에 기초하면서도 그와는 별개인 사회적 수요를 이룰 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행정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의 측정 및 예측기법이 발달하여야 한다. 행정수요의 측정은 그것의 계량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행정수요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계량의 기준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

다(Choi, 1985: 129-130).

## 3) 국민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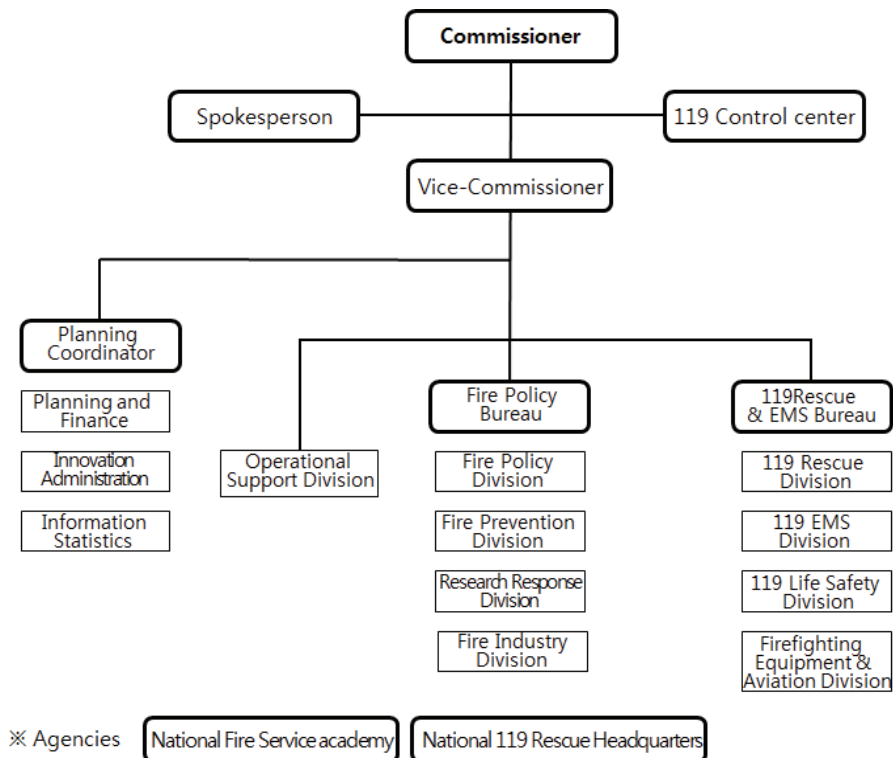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었다. 또한, 국민의 이익 집단적 성격이 나타나고 지역경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현재의 정체된 조직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조직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 III. 소방조직 실태분석

### 1. 중앙정부의 소방조직

중앙정부의 청(廳)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은 타 중앙행정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성과가 가시적이고 명확한 기관으로서 부·처에 비해 표준운영절차(SOP)가 잘 구비되어 있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Yoo, *et. al.*, 2006: 24-25; Jo & Lim, 2010: 399). 청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소방조직인 소방청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42년 만에 독립한 대한민국의 소방조직 외청이다. 소방청은 육상재난의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점점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현장 중심의



※ Source: www.nfa.go.kr/.

Figure 1. Fire department organization

조직을 강화하여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소방청 조직은 119종합상황실,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등 1실, 1관, 2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업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국은 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방학교가 있으며 이들 조직의 구성원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이다.

## 2. 지방정부의 소방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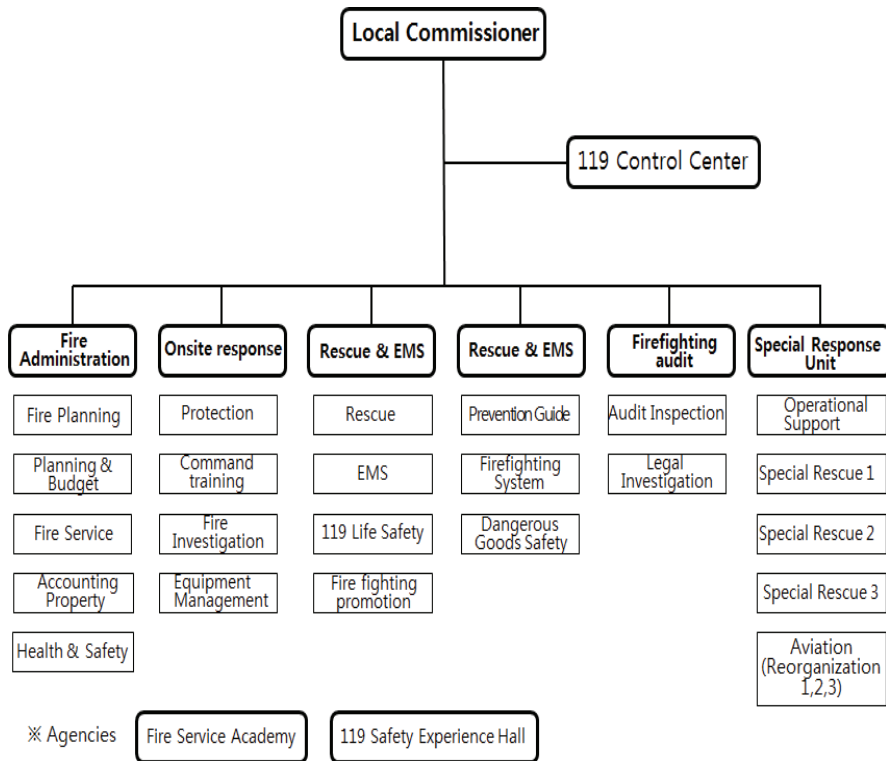
우리나라 소방본부는 시·도의 특수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직무범위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직무범위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과· 구조구급과· 종합상황실· 예방안전담당관· 소방감사담당관· 특수구조단 및 119안전체험관의 부서별 직무 범위가 행해져 있다.

소방서는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소방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는 “소방서의 과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각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소방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부산광역시 소방서의 직무범위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있다.

소방학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부산광역시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인재양성과 및 교육훈련팀을 두고 있다.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소방항공대의



※ Source: Fire Safety Headquarters, Busan.  
Figure 2. Local fire department organization

직무범위는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치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9안전센터의 직무는 화재발생시 출동·진화 및 특별경계근무·화재예방 지도·계몽, 위급환자 응급처치·병원이송 및 시민생활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독거노인 자동신고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검사·소방정보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위험물 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119구조대의 직무는 화재 및 재해 사고현장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구조·구출 방법의 정보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하천에서의 수난 구호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대원 안전관리 교

육, 재난취약대상 현지적응 및 인명구조·장비조작 훈련,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소방정대의 직무범위는 항계내 선박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해난사고시 인명구조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소방정 안전운항 및 계류장·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홍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접안지 조사 및 연안 인접 육상화재시 해수지원 활동, 그 밖에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 3. 실태분석 시사점

#### 1) 소방정책 기능 부족

「소방기본법」 제6조에서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에는 ①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

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③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④ 소방전문인력 양성, ⑤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⑥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⑦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청은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소방청 조직내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업과 등이 소속되어 있어 소방정책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소방의 미래전략적인 정책기능 등의 의제가 설정되지 않고 처방적인 대안을 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즉 특정소방대상물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1,382,420건, 2013년 1,409,594건, 2014년 1,868,208건, 2015년 1,930,878건, 2016년 2,019,625건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재진압활동을 살펴보면 2012년 43,249건, 2013년 40,932건, 2014년 42,135건, 2015년 44,435건, 2016년 43,41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인명구조 활동도 2012년 565,753건, 2013년 531,699건, 2014년 598,560건, 2015년 630,197건, 2016년 756,987건으로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응급의료 서비스인 구급활동은 2012년 2,156,548건, 2013년 2,183,470건, 2014년 2,389,211건, 2015년 2,535,412건, 2016년 2,677,74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소방행정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소방조직도 그에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3) 국민의 안전 욕구 증대

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교육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과거에 비해 매우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소방기관에서 출동한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65,753건, 2013년 531,699건, 2014년 598,560건, 2015년 630,197건, 2016년 756,98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생활안전은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사회재난 등에 비해 사고를 경험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분야별로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법체계가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 위한 소방조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4) 소방행정환경 변화

최근 재난의 양상을 살펴보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재난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40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 또한 약 20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다.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9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10명, 경상자 141명이 발생하였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우면산 주위에서 산사태가 여럿 발생,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등에서 18명이 사망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양강댐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펜션(pension)이 매몰되어 투숙 중이던 인하대학교 발명 동아리인 '아이디어뱅크' 학생 10명과 인근 주민

3명이 숨지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온 국민은 논란 나머지 혼란에 빠졌다. 최근의 재난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염병과 동물의 전염병 등 재난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재난의 환경은 광역적 재난, 대형재난, 재난발생 빈도 증가, 재난대응 어려움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대응에 신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조직은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 5) 대형재난 대응능력 요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관할 소방서장이다. 현장지휘는 ①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②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③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④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⑤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⑥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⑦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각급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소방조직은 재난대응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방청은 긴급구조통제

단 운영과를 신설하여 대형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소방청과 소방서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팀을 신설하여 긴급구조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IV. 소방조직 개편방안

### 1. 소방청 조직 개편방안

소방조직은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조직을 2실 2관 5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소방청의 조직개편 안은 예방정책 기능, 방호조사 기능, 장비항공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기능을 강화하였다. 첫째, 예방국을 신설하여 소방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화재안전전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 둘째, 방호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방호의 기능, 화재조사의 기능,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능, 교육훈련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119상황실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대변인실은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청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다수인 관련 민원 종합관리,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기획조정관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입

무에 관한 사항, 소방조직의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주 요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에 관한 사항, 소방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청과 시·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방호조사국은 재난대응의 정책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곱째, 예방국은 소방제도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국가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한국소방안전원 등 산하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에 관한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덟째, 구조구급국은 구조구급 정책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구급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감염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홉째, 장비항공국은 소방장비에 관한 사항, 항공기 운항 등 제반사항, 항공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 환자 항공수송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소방정보통계에 관한 사항, 소방정보화 추진에 관한사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에 관한사항, 재난현장 GIS응용에 관한 사항, 재난영상전송시스템에 관한 사항, 행정 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열째,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와 119중앙구조본부, 소방연구소를 둔다. 중앙소방학교는 소방현장의 지휘역량과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다.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하여 대규모 복합재난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재난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시·도지사의 요청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그 밖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연구소는 소방정책을 개발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정책을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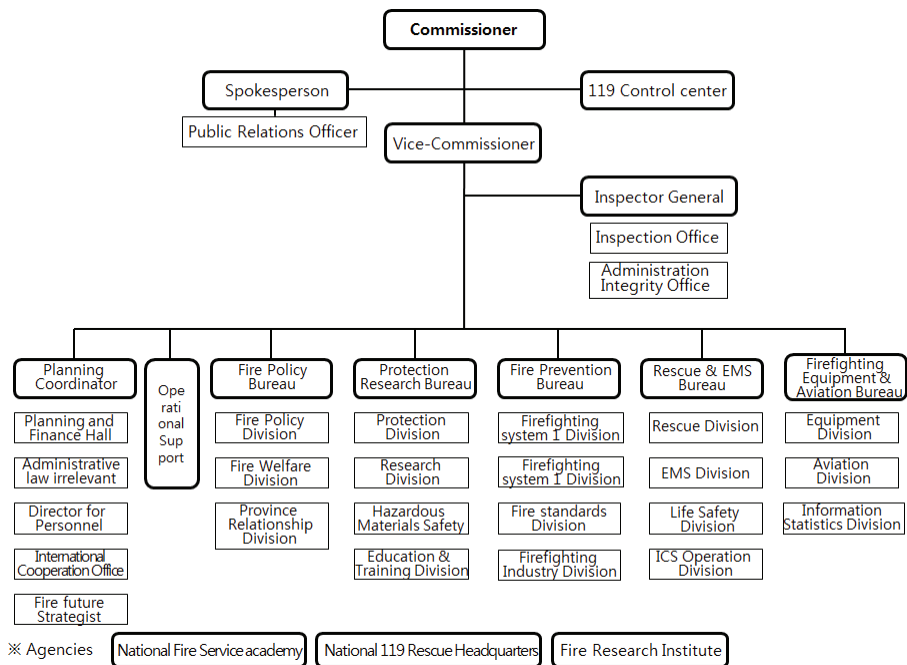


Figure 3. Reorganization of fire department(plan)

## 2. 지방소방청 조직개편 방안

지방소방조직은 지역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집행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소방조직을 1실 1관 5과 1단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19상황실은 재난 등의 발생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수습 활동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현장상황의 관제·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SNG차량의 운행·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상황근무 및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에 관한 사항,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청문감사담당관은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 종합감사·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행정 취약분야 기획감사에 관한 사항, 소방청 등 상급기관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비위조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소방행정 정책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관한 사항,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처리 및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

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상훈,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행정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체력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의 설치·폐지·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장기 소방안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방호조사과는 화재진화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특수시설물 등 화재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유형별 대응방법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소방 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의 기획·조사에 관한 사항, 위험물단속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 기획 및 일반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 운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소방전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예방과는 화재예방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법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용품 관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대책·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주택·공공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사항, 옥외행사장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구조구급과는 구급업무의 교육·종합기획·조정, 구조구급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구조업무의 종합기획·조정,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구조 활동의 훈련 실적 등 지도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운영·평가·훈련 등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119생활안전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9생활안전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상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곱째, 교육훈련과는 재난안전 전문교육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119소년단 등 어린이, 청소년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체험캠프 운용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정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 및 대민안전사고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소방홍보 총괄 및 기획·보도 조정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캠페인 및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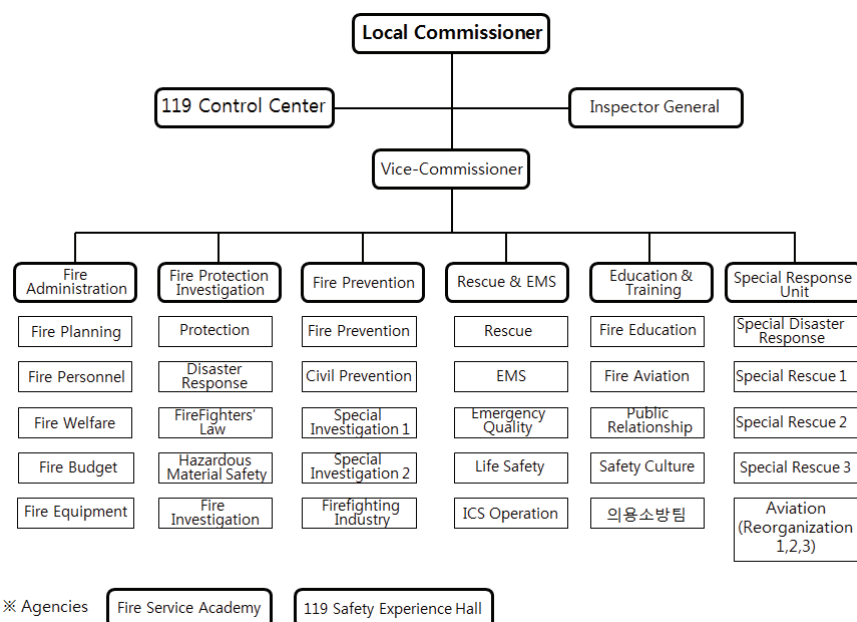


Figure 4. Reorganization of local fire department(plan).

여덟째, 특수대응단은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 활동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장비 및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항공대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소방항공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 구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진·테러·화생방·국지도발 등 특수재난 대응대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테러대응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테러현장 임무수행 및 출동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테러전담조직과의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지원에 관한 사항,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 항공조종사 양성 및 비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이착륙장의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정비계획 및 검사와 외주계약검사에 관한 사항,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조종사 비행교육·훈련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소방서 조직 개편방안

일선 소방서는 시·군·구에 설치되며,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한다.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선소방서의 조직을 5개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소방행정과는 인사 및 근무·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복무감찰,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상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행사계획 수립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의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조직관리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 장비·물품의 유지·보수에 관

한 사항,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 추진, 소방정보통신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방호과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 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지리·수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 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화재감정·감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예방과는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검측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지진, 방사능, 유해 화학물, 대테러, 국지도발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구조구급과는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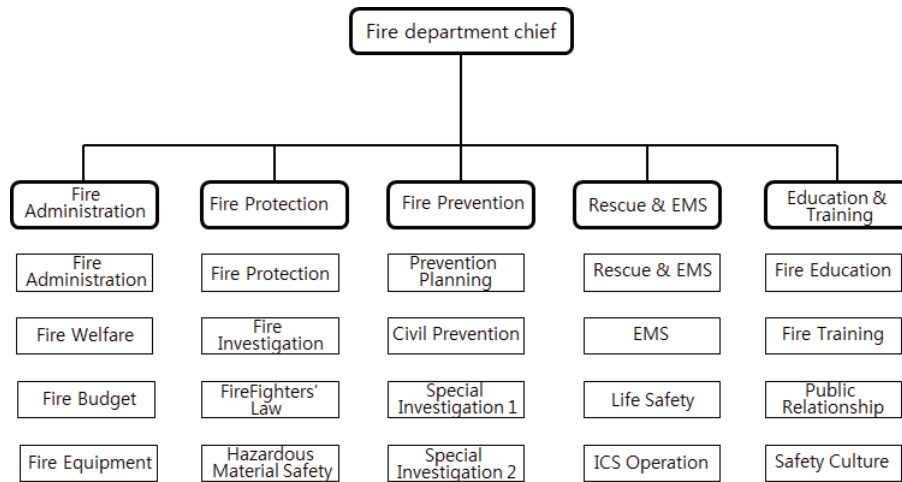


Figure 5. Fire station organization reorganization(plan)

리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교육훈련과는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서 체험 교육에 관한 사항,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등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V. 결론

소방조직 개편은 전체적으로 변화된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은 어디까지나 소방안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인 만큼, 소방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개편된 소방조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소방안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 개편을 통해 소방조직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조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소방조직에 대한 구

체적인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소방청 조직은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재난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어 한다. 소방안전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민 중심적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재난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난환경 변화와 위험사회에 걸맞은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실 2관 5국의 소방청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방청 조직은 지역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집행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소방조직을 1실 1관 5과 1단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선소방서 조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 기관이다. 일선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한다. 따라서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

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를 5개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소방조직 개편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의 실태분석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edeian. 1980. *Organizations, Theory and Analysis*. Dryden Press.
- Caiden, Gerald E. 1991. *Administration Reform Comes of Age*. New York: DeGruyter.
- Daft, R. L. 2004.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South-Western.
- Etzioni, A. 1967. Mixed-scanning: A "Third" Approach to Decision-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7(5): 385-392.
- Gulick, Luther. 1937.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 In Luther Gulick and Lyndall F. Urwick(ed.),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New York: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lumbia University.
- Haggard, S. and M. McCubbins. 2001. *Presidents, Parliaments, and Policy: 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s and Decis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 Kwang Seok, et. al. 2000.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System Development Model and Policy Effect. Kore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Jeong, Ui Chang. 2006.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0(3): 1-25.
- Jo, Seok Jun and Do Bin Lim. 2010. *Theory of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obmunsa.
- Jo, Seng Han. 2007. Reorganizing Central Government: Factors and Process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 4(2): 1-18.
- Jo, Seng Han. 2000. Theoretical Paradox and Inappropriate Process: Fallacy of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in Korea.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9(1): 5-27
- Kim, Sang Woon. 2017. A Dynamic Analysis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Process in Korea: Focusing on ICT Policy Subsystem. Ph. 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In Soo. 2005. *Theory of the Macro Organizational*. Muyokpub.
- Knott, J. H. and G. J. Miller. 1987. *Reforming Bureaucracy: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oice*. Prentice Hall.
-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6. *Reflection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s and the Future Outlook*. Dymbook.
- Lee, Yoon Kyung and Yeong Jae Moon. 2011.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 8(1): 59-106.
- Lee, Jae Sam. 2013. A Study of Development Plan for the Reorganization of Korea under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Law Review*. 49: 188-189.
- 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
- Moon, Yeong Jae. 2009. A Repetitive Pattern and Realit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23(4): 23-41.
- Oh, Seok Hong. 2003. *Theory of the Organization*. Seoul. Parkyoungsa
- Park, Chen Ho. 2011. A Critical Review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 8(1): 1-30.
- Park, Chi Sung, Jae Rok Oh, and Ju Hyun Nam. 2011. An Empirical Study of Nation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 Focus on Changes in the Network Structures of Formal Document Exchanges between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9(4): 51-82.
- Peters, B. G. 1992. Government Reorganization: A Theoretical Analysi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3(2): 199-217.
- Steinmo, S., K. Thelen, and F. Longstreht. 1992.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mo, S. and C. J. Tolbert. 1998. Do Institutions Really Matter? Taxation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1(2): 165-187.
- Yang, Gi Geun, et. al. 2013. *Introduction to Fire Administration*.

Dymbook.

- Yoo, Hong Lim, et. al. 2006. Development of Standard Model for Government Organization Design. The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
- Yoon, Joo Chul, Ji Sook Yang, and Young Han Chun. 2011. Reorganization, Agency, and the Politic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urvival Tim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1970-2008.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2): 187-213.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상운. 2017.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동태적 분석: 정보통신, 방송, 과학기술 정책 하위체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수. 2005. 거시조직이론. 무역경영사.
- 문명재. 2009.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23-41.
- 박천호. 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8(1): 1-30.
- 박치성, 오재록, 남주현. 2011.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9(4): 51-82.
- 양기근 외. 2013. 소방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 오석홍. 2003.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 유홍림 외. 2006. 정부조직설계 표준모델 개발. 행정자치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윤주철, 양지숙, 전영한. 2011. 조직개편, 기관특성, 그리고 정치적 환경. *한국행정학보*. 45(2): 187-213.
- 이윤경, 문명재. 2011. 국정외제의 변화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8(1): 59-106.
- 이재삼. 2013.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법학연구*. 188-189.
- 조석준, 임도빈. 2010. 한국행정조직론. 경기: 법문사.
- 조성한. 2007. 정부조직구조의 영향요인. *한국조직학회보*. 4(2): 1-18.
- 조성한. 2000. 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9(1): 5-27
- 정의창. 2006.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김대중 정부의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1-25.
- 한국행정연구원. 2016.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대영문화사.
- 한광석 외. 2000. 지방자치행정체제 발전모형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Received: Jul. 23, 2018 / Revised: Aug. 23, 2018 / Accepted: Sep. 11, 2018

## 소방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과 소방조직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소방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환경변화와 소방안전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소방조직 개편방안으로 첫째, 소방조직은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조직을 2실 2관 5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소방조직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소방조직을 1실 1관 5과 1단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일선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한다. 따라서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를 5개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소방, 소방조직, 조직개편

Profiles **Jin Chae** : He received a Ph.D. degree from University of Seoul(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in Fire Administration), and is currently serving as a full-time professor at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Concurrently, He is also an Operation Director of Korea Policy Forum, a Scouting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 Special Affairs Director of Crisis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an Editorial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His major interesting fields are disaster management, fire-fighting policy, fire administration, safety culture, and risk and safe society, etc. Major publications include Fundamentals of Disaster Management(Institute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articles such as “A Study on the Safety Culture in Korea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Crisisonomy, 2017), “Improvement Plan of Disaster Response System for Hazardous Chemical Accidents”(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these21@korea.kr).

**Jeong Soo Lim** : He graduated from Keimyung University with a Ph.D. degree. Currently, he works as the head of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of the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ljsf119@korea.kr).